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

□ 온라인 학술대회 정의

-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소재한 참가자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쌍방 화면 송출방식을 통해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규약 제3조 제8항에 정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경우(이하 “온라인 학술대회”), 본 세부 기준에 따른 지원요건과 절차가 공정경쟁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됨.
- 온라인 형태의 학술대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이하 “온·오프라인(하이브리드) 학술대회”), 본 세부 기준에 따른 지원요건과 절차가 공정경쟁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됨.

□ 지원 연장 목적

-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코로나19 일상화 및 학술교류 환경변화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학술대회 개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상황을 고려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 함.

□ 연장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신청(1년 연장)

□ 관련규정

1) 공정경쟁규약 제8조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단체가 주관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을 기부, 식음료 제공, 기념품 제공, 부스 임대,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1.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 2.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2) 공정경쟁규약 제15조 (전시·광고) 및 세부운영기준 제11조 (전시·광고)

□ 지원대상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 연장 지원

-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기준에 따라 온라인 광고
 - 신청기간 : 학술대회 개최 전 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신청, 승인된 심의내용에 따라 진행
 - ※ 온라인 광고 : ① 온라인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학회 등에 대하여 ② 온라인 학술대회 전용 매체를 활용하여 ③ 이미지, 영상, 전자문서 또는 지나가는 문자 형태 등으로 ④ 회사명 및 로고, 제품명 등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함. (온라인 부스는 온라인 광고로 통칭)
-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 허용
 - 외국인 참가자 인정 : 내한 → 온라인 참석 가능(공정위·복지부 유권해석)
-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 허용

구분	연장 지원(안)		
관련 규약	공정경쟁규약 15조(전시·광고), 세부운용기준 11조(전시및광고)		
온라인 학술대회	(1)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AND 참석자 800명 이상 : 건당 최대 300만원 (최대 2건 600만원) (2)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 강좌 : 건당 최대 200만원 (최대 2건 400만원)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학술대회의 경우, 초록집 광고 가능 ※ 참석자 수는 전년도 개최한 정기 학술대회 참석자 수 (ex 22년 학술대회 개최시 21년 참석자) 기준, 전년도 학술대회 실적이 없는 경우 전전년도 실적 준용		
	지원 조건	최소 요건	① 보건의료전문가 참석자 기준 - 학술단체 : 50명이상 / 희귀질환학회 : 25명 이상 ② Agenda 및 행사시간 기준 : 학술 관련 Agenda 3시간 이상

		광고 수	① 학회 : 지원 회사 수 최대 40개사 / 광고 합산 최대 60개 ② 회사당 광고 2개까지 지원 가능 ※ 예외사항 : 초록집 광고 숫자는 위의 수량에 합산하지 않음
		중복 지원 금지	① 한 회사는 규약 제8조에 따른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기부금과 제15조의 광고·부스비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
하이브리드 (온오프라인 병행) 학술대회	(1) 학술대회 전체 참석자 중 20% 이상 오프라인 참석 (연자 포함) (2) 오프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 적용 ① (부스 당) 학회 등 200~300만원 / 요양기관 50~100만원 ② (회사 당) 오프라인 부스 최대 2건 설치 가능 ③ 온라인 광고 지원 불가 ※ 개별 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개별 요양기관 지원 가능(규약 기준과 동일)		
기타	(1)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 정부 정책으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재논의를 통해 조정. (2) 학술대회 지원 요청 및 결과 보고시, 학회는 사업자에게 공문과 함께 관련 증빙 제공.		
	구분	기재사항	비고
	지원 요청	① 계획 : 장소, 시간, 방식 (온,오프, 하이브리드) 아젠다, 예상 참가자 수 등 ② 단체 입증 : 회원증 또는 인증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포함) ③ 전년도 자료 : 장소, 시간, 아젠다, 개최방식, 참가자 수 등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공통 적용
	결과 보고	① 개최결과 : 참가자 수, 지원 받은 광고 수, 광고 위치 증빙 등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

구 분				현 행	연장	비고
기 간				21년 7월 ~ 22년 6월	22년 7월 ~ 23년 6월 (1년 연장)	
지원 대상 (공정경쟁규약 제8조 1항 참조)				의협, 병협, 의학회, 의학회 회원학회, 약 사회 및 약사회 지부 등	의협, 병협, 의학회, 의학회 회원학회, 약사회 및 약사회 지부 등	
온라인 학 술 대 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가 및 대한약사회 지부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AND 참석자수 800명 이상			건당 최대 300만원 (최대 2건 600만원)	건당 최대 300만원 (최대 2건 600만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 지부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단일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건당 최대 200만원 (최대 2건 400만원)	건당 최대 200만원 (최대 2건 400만원)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분회 개별 요양기관 개최 학술대회			건당 최대 100만원 (최대 2건 200만원)	미지원 / 초록집 지원	
	지원 조건	최소 참석 인원		- 학술단체 및 개별 요양기관 : 50명 - 희귀질환학회 : 25명	- 학술단체 및 개별 요양기관 : 50명 - 희귀질환학회 : 25명	
		학술대회 Agena		- 학술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 학술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광고 건수	학회	- 지원 회사 수 : 최대 40개사 - 광고 합산 개수 : 최대 60개	- 지원 회사 수 : 최대 40개사 - 광고 합산 개수 : 최대 60개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개별 요양기관	- 광고 합산 개수 : 최대 30개 (연 1회 지원)	미지원 / 초록집 지원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 온라인 기준 지원	- 총 참석자 중 20% 이상 오프라인 참석 (연자포함) - 오프라인 기준 지원, 오프라인 부스 설치 (최대 2건) - (부스 당) 학회 등 200~300만원 / 요양기관 50~100만원	
기타				- 규약 제8조에 따른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기부금과 제15조의 광고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초록집 및 학회 홈페이지 광고는 학술대회 광고 수에 미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 정부 정책으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재논의하기로 함.		

전시·광고 증빙 자료 요청

구분	공문 발송	기재사항	비고
지원 요청	학회 → 사업자	① 세미나 계획 : 장소, 시간, 개최방식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아젠다, 예상 참가자 수 등 ② 단체 입증 서류 : 회원증 또는 인증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포함) ③ 전년도 결산 자료 : 장소, 시간, 아젠다, 개최방식, 참가자 수 등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공통 적용
결과 보고	학회 → 사업자	① 개최결과 : 참가자 수, 지원 받은 광고 수, 광고 위치 증빙 등	

- ※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 (2022년 7월 ~)부터 학회 등은 사업자에게 학술대회 내용 공문 및 첨부 서류로 제공
- ※ 규약운영단체 (KPBMA, KRPIA, KMDIA) 공정경쟁규약운영시스템에 학회 등이 접속시 팝업의 형식으로 공지 및 협조 요청